

가 정 통 신 문

담당 : 예체건강부

제 2022 - 142 호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07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지침 **변경 내용**과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한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 유형 및 확인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개인방역 실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중 변경 내용

시행일시	변경사항	주요내용
2022.9.26.(월)	실외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022.5.2.) 이후, 남아있던
00:00부터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권고사항: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 ※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인사항

내용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을 가진 사람
방역당국 확인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 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확인 ▶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인 경우, 위의 의학적 소견이 명기된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
유의사항	 학교 실정에 맞게 판단함은 의학적 소견과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학교 밀집도 등의 여건을 고려한 특수한 상황에서 착용을 가능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인 만 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 → 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수 있도록 조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며, 학교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유지

2022, 9, 28,

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 [직인생략]